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200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 부서 : 교육 위원 회

1. 개정 이유

○ 교육위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국내·외여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이고, 적정의 국내·외여비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충청북도의회위원의외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아래란에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함.

○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비교란에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함.

3. 계경안 : 불입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 충청북도의회위원의 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아래란에 “1”을 “비고 : 1”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p>1. 철도승임구분표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승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승임을 지급한다.</p> <p><신 설></p>	<p>[별표 1]</p> <p>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p>비고: 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u>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별표 2]</p> <p>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미분화)</p> <p>비고: 1. 숙박비·식비의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의 비교란에 정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적용한다.</p> <p>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p> <p><신 설></p>	<p>[별표 2]</p> <p>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미분화)</p> <p>비고: 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u>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 조례안 심사 관계규정

1. 공무원여비규정<2002.1.4 대통령령 17484>

【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4조

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1.1.29>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2.3.25, 2000.2.28, 2001.1.29>

3.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2조(의회의 의정활동비등)①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99.8.31>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에 의해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4.3.16]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30,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데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속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95.12.30> [전문개정 95.7.1]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2000. 5. 4 조례 제2583호

제8조 (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5.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전문개정 2000. 4. 8 조례 제2580호)

제5조(여비지급기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위원의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